



제6편(Title VI) 이의신청 절차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6편(Title VI)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음 내용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혜택 제공과 관련된 MoDOT의 제6편(Title VI) 프로그램의 이의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이의신청자가 공식적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자는 미주리주 인권 위원회(Missouri Commission on Human Rights),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또는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안전 관리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과 같은 해당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모든 종류의 차별, 위협 또는 보복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에 대해 개인 변호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주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 교통부
사업 개발 및 규정 준수
타이틀 VI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P.O. 박스 270
미주리주 제퍼슨 시티 65102-0270

또는 다음으로 이메일 발송:

TitleVI@modot.mo.gov

이의신청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제6편(Title VI) 조정관이 비공식 회의를 할 수 있는 선택안은 이러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이의신청 사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이의신청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의신청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자가 서면 진술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구두 이의신청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제6편(Title VI)

1/3 페이지

접근 가능한 형식: 이 문서는 요청 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불만 사항 절차의 종이 사본과 이러한 접근 가능한 형식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주소로 MoDOT의 사업 개발 및 규정 준수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573)526-2978.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은 (800)735-2966번으로 미주리 중계 서비스에 연락하여 통화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편(Title VI) 이의신청 절차

조정관은 이의신청자를 심사하고 해당 이의신청자가 구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모든 이의신청 사항에는 이의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b. 이의신청서는 의심되는 차별 행위가 일어난 날짜 또는 이의신청자가 의심되는 차별 행위를 인지하게 된 날짜, 행위가 중단된 날짜 또는 해당 행위의 가장 최근 사례를 포함합니다.
 - c. 이의신청 관련자로 인식되는 당사자의 성명과 직위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 주십시오.
 - d.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제6편(Title VI) 조정관은 관할권, 이의신청의 수용 가능성,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해당 이의신청을 배정합니다. 참고: FHWA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이의신청은 FHWA 본부 민권 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에 전달되어 이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자는 [여기](#)에서 해당 절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MoDOT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했다는 서면 확인서가 해당 이의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4. 이의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수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이의신청이 사건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b. 사건 혐의에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와 같은 차별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 c. 사건 혐의가 연방 지원 수령 기관, 하위 기관 또는 계약자의 MoDOT 서비스와 관련되어야 함
5.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a.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 b.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반복적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 c. 이의신청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한 후에도 이의신청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6. MoDOT가 이의신청을 조사하기로 수락을 결정하면, 이의신청자에게 관련된 결정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에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의신청자의 성명과 이의신청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됩니다.

제6편(Title VI) 이의신청 절차

7. MoDOT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맡는 경우 이의신청을 수락한 후 90일 이내에 제6편(Title VI) 조정관 또는 배정된 조사관이 대외민권국장(Director of External Civil Rights)의 심사를 위해 조사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건에 대한 서술적 설명, 면담한 당사자의 신원, 조사 결과 및 권장 사항이 포함됩니다.
8. 조사 보고서와 그 결과는 MoDOT 장관 또는 임명된 피지명인 및 대외민권국장과 최고 법률 고문실(Chief Counsel's Office)이 심사합니다.
9. MoDOT 장관 또는 임명된 피지명인이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MoDOT가 제6편(Title V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10. 장관의 결정에 대한 통지는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항소 권리 정보 및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MoDOT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최초 결정을 재고할 것입니다.
 - b. 이의신청자가 MoDOT에서 정한 결정 및/또는 해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이의신청 사항을 미주리주 인권 위원회(Missouri Commission on Human Rights),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또는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안전 관리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과 같은 해당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직접 조사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 사본과 MoDOT의 조사 결과 서신은 이의신청 수신 후 120일 이내에 해당 USDOT 연방 기관에 제출됩니다.
12. 이의신청 요약 및 해결 방법은 해당 USDOT 연방 기관에 대한 제6편(Title VI) 업데이트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13. 제6편(Title VI) 조사 보고서는 최대 3년 동안 보관되며 규정 준수 심사 감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